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에 너 지 산 업 과

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

구 미 시

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이행사항으로 이차전지 기업 및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노·사·민·정 상생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출연금을 2027년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해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2) 소 재 지 :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, 구미전자정보기술원

3) 출연금액 : 300백만원

4) 사 용 처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상생협력기금 조성

나. 사업 개요

1) 사 업 명 :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

2) 운용주체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

3) 사업내용 :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사항인 상생협력기금 운용 및 센터 운영관리를 통한 노·사·민·정 상생협력 강화

- 이차전지 관련기업 기술역량 강화 지원
- 기업 맞춤형 상생 지원
- 지역인재 지원
-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 등

다. 관계법령

1)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2)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제14조

3)「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」제7조, 제19조

3.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가. 출연안 제출 : 2026. 10월

나. 출연안 심사 및 의결(제300회 임시회) : 2026. 10. 13. ~ 22.

다.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상생협력기금 출연 : 2027.

라.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업무추진 및 기금운용 : 2027. ~

4. 기대효과

가. 기금 운영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업[(주)LG-HY BCM]과 이차전지 관련기업에 기술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, 이차전지 관련 전공자에게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이차전지 소재 산업 육성에 기여

나. 지역 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여 이차전지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이차전지 기업 지원, 노사 상생 및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내 상생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

제14조(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

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

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, 집적(集積)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,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·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」

제7조(지원 및 촉진사업의 추진) ① 시장은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구미형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, 컨설팅, 연구사업
2. 구미형 일자리 모델의 창출·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
3.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약 및 핵심의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
4. 구미형 일자리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·지원 사업
5. 고용안정·유지·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
6.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갈등해소, 노사상생프로그램

7. 노동복지 증진 및 노·사·민·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
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(상생협력기금) ① 시장은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상생협력 기금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금은 재단법인이 관리·운용한다

1. 가치공유형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관련 협력기업의 상생협력 강화

2. ESG프로그램의 지역화

3.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

② 상생협력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로 정한다.

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·사·민·정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재정수반요인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노사민정 상생협약서('21.11.10)를 바탕으로 경북도, 구미시, 민간기업에 출연금 책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7년	합계
세 출	300	3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7년	합계
시 비	300	300

※ 2027년 상생협력기금 총 600백만원 출연(도비 300, 시비 300)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 성 자 : 에너지산업과 이차전지팀 김지원(☎480-2744)

소 관 부 서		에너지산업과
입 안 자	과 장	김 철 년
	팀 장	손 현 경
	담 당 자	김 지 원 (480-2744)